벤처프런티어교육원 규정

제정 2023.11.20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벤처프런티어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소재) 교육원은 본 대학 총장직속기구로서 본 대학 내에 둔다.

제3조 (설치목적) 교육원은 대학의 미래 지속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넘어 범세계적인 대학 위상 제고를 위해 본 대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재를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본 대학 구성원과 동문들에게 자긍심과 애교심을 갖게 하는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운영위원회

제4조 (원장) 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다.
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
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의 설치)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호선하여 정한다.
② 위원회는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부원장이 간사를 담당한다

제7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교육원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
2. 교육원 규정 개정안 심의에 관한 사항
3. 교육원생 상벌에 관한 사항
4. 교육원장의 심의 요청 사항

제8조 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 영

제9조 (교육대상) ① 교육대상(이하 “교육원생”이라 한다)은 본 대학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에서 선발하며 선발 기준 및 세부사항은 교육원 운영 기준으로 따로 정한다.
② 교육원생 선발 과정에 있어 지원자 또는 교육원생과 특수 관계인은 회피·배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 (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) ① 교육원은 교육원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운영한다.
② 교육원생의 교육 과정 및 이수 교과목은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을 준수하며, 교육원의 미래 비전과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을 통해 개설된 교과목의 이수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11조 (교육방법) 강의, 실습, 비교과 등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행한다.

제12조 (편제 및 인원) ① 교육원생 선발은 매년 1회 10인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 40명 내외를 편제정원으로 한다.
② 필요시 교육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원을 적정 증원 또는 긴급 선발 할 수 있다.

제13조 (등록 및 혜택) ① 교육원에 선발된 자는 교육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.
② 교육원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선발은 자동으로 취소된다.
③ 교육원생 장학금 및 지원사항은 교육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④ 교육원생의 교육에 필요한 기타 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.

제 4 장 상벌

제14조 (표창) 교육원생 중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5조 (탈락기준) 선발자가 교육원 운영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탈락여부를 결정하며, 탈락 결정 즉시 선발자 기준을 박탈한다.

제16조 (인증서) 본 교육원 소속으로 졸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명의의 벤처프런티어 인증서를 수여하며, 본 증명서는 졸업식 행사에서 수여한다.

제 5 장 재 정

제17조 (재정) ① 예산은 본 대학에서 교비로 충당하며, 기부금 또는 지정장학금을 활용 할 수 있다.
②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6 장 보 칙

제18조 (규정 적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학칙 및 학칙 시행규칙과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(2023.11.2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